

〈國立公園管掌 內務部로, 法改正되기까지〉

曹溪宗 反對로 한때 험악한 분위기

조계종, 地方稅 마련이용 · 紛爭소지發生 · 山林훼손우려등 指摘

▲編輯者註：행정민주화 효율적인 국가행정 집행을 표방하고 지난 10.22. 李衍澤 총무처장관은 756종의 중앙부처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케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국립공원 관리기능 관장부처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법령과 직제를 개정,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국회에 제출했었다. (47/48호 60p 기보)

그러나 지난 11월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공단이사회에 이사인 徐義玄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을 대리해서 참석했던 동 총무원 사회부장(淸平寺住持) 張濟願스님은 동회의 석상에서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직접 당사자이며 국립공원의 대부분이 사찰문화재와 사찰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당국자가 1,600년의 역사와 1,600만 불자를 가진 佛教 조계종측과 상의도 없이 관리기구의 변동을 결정했음을 유감」이라고 토로하고 정부의 안이 조계종측에 불이익이 온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시사한바 있었다. 조계종측이 지난 11월29일 정기중앙총회에서 정부안에 정면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날 청원서를 제출한 사태는 도하 각신문 방송에서 아무런 논평없이 크게 보도했는데 지면관계로 몇개 신문기사만 추려 경과자료로 실는다. <N>

내무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종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산문폐쇄, 천만명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청원권을 행사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11.29. 폐막된 조계종중앙총회. 국립공원관리 주체변경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다.

徐義玄총무원장은 11월30일 기자회견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관한 청원서를 각계요로에 보냈다. 조계종은 29일 폐막된 중앙총회에서 국립공원관리주체 변경에 반대키로 결의했다. 중앙총회는 또 차기종정 추대건도 다음총회로 넘겼다.

義玄원장은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할 경우 ▲공원내 사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마련에 이용될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공원내 사유지 개방이 불가피해져 다른 종교시설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며 ▲위락시설의 대량 건설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義玄원장은 이어 현재 산림보존및 탐

〈朝鮮〉

徐義玄총무원장, 千만명 署名運動
국민청원권 행사등 強力대응시사

조계종은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주체를 건설부에서

방객 편의를 위해 징수되고 있는 공원입장료도 공원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건설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인 말고 있는 공원관리업무를 내무부로 넘기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조계종 사찰의 70%는 국립공원내에 있다.

宗正임기만료 내년 20일

한편 제7대 중정 추대건은 종헌-종법중 중정추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대위원간 이견을 보여 연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현性徹중정의 임기만료일(내년 1월20일)을 감안, 늦어도 12월20일 전에 다시 종회를 열어 중정을 추대키로 했다. 조계종 중정추대가 연기되기는 통합종단 발족이후 처음이다.

이번 종회서 추대대상은 현性徹 중정과 불국·법주사 조실인 月山스님 두분으로 좁혀졌으나, 性徹스님을 지지하는 범어문중과 月山스님을 지지하는 금오문중(월자문중) 추대위원 사이에 종회성원기준을 두고 각각 다른 견해를 보였다. 88년 개정된 종헌-종법에 따르면 중정추대위원은 총무원장을 비롯, 원로회

의 의원전원(19명), 종회에서 선출하는 위원(31명) 등 53명이며, 이들의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중정을 뽑는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두고 범어문중은 원로회의 의원과 종회선출위원이 각각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되는것으로 해석했고, 금오문중은 전체위원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중정을 추대할수 있다고 다른 주장을 폈다. 그런데 종회선출위원은 원로회의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스님들로, 月山스님을 지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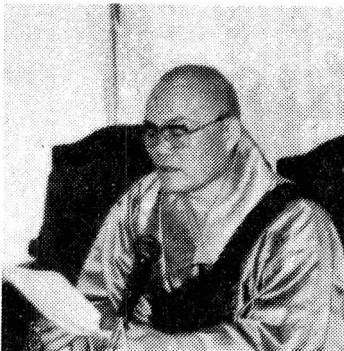
密室서 치열한 경쟁거쳐 선출

불교계 일각에서는 중정추대종회가 연기된데 대해 「위원들이 투표결과가 시중의 여론과 달리 나타날 것을 우려한 결과일것」이라고 말해 다음번 종회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중정은 겉으로 「추대」형식을 취하나 「밀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선출된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性徹·月山스님과 함께 중정후보로 거론되어온 통도사방장 月下스님은 性徹스님의 유임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1. 조선일보)

〈每經〉

國立公園管理 국회통과 앞두고 암초에... 佛敎界, 內務部移管 強力반발



△ 사진 : 徐義玄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립공원관리는 건설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曹溪宗 제101회 中央총회서 內務部이관 政府案 反對키로

지리산등 전국의 국립공원관리업무 이관문제가 마무리단계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복병은 불교계. 조계종은 국립공원관리업무는 현행대로 건설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국립공원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암초에 걸렸다.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현재 건설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건설부가 계속 관장하는 방안과 내무부 또는 산림청 환경처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가 내무부로 소관업무를 넘겨주기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는 관광수입을 해당지역과 현지 주민에게 돌려주고 사법경찰권 행사에 의한 국립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또 산림청은 산림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관장해야 한다고 각각주장, 부처간 격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같은 진통을 거쳐 결국 내무부로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이관키로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나 이번에는 불교계가 異議를 제기하고 나선것.

조계종은 지난 11월29일 열린 제101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정부의 국립공원관리 주체의 내무부이관 방침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의한뒤 30일 조계종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는 청원서를 제출.

조계종측은 공원관리 업무가 내무부로 넘어갈 경

우 지방자치단체가 稅源증대를 위해 공원내 사유지에 대해서도 개방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인해 타종교 시설이 공원내로 유입되어 종교간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원입장료 징수방법및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사찰및 탐방객의 피해증가를 가져오고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한 세금의 낭비등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림보존및 탐방객의 편의에 이용되어 왔던 공원입장료가 지방자치단체로 대부분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정부방침을 철폐, 현행대로 건설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은 자신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문폐쇄 쉼기대회 서명운동전개등 강경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있다.

불교계가 이처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체계의 내무부 이관을 둘러싸고 국회통과 과정에서 격심한 논란이 다시 일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변경이 뜨거운 불씨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12.1. 每日經濟)

〈中央〉 「국립공원관리 內務部이관」

佛敎界 발끈

“山林훼손과 寺刹문화재 維持・補修에 곤란”



△ 사진 · 지리산국립공원 華嚴寺全景

佛敎界는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曹溪宗은 지난달 29일 중앙총회에서 반대입장을 결의하고 30일 정부에 청원서를 냈다. 曹溪宗은 청원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山門폐쇄 · 반대집회 · 1천만명 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청원 권행사등 강경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佛敎界가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내무부 이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무부로 이관될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게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립공원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국립공원내의 사유지에 위락시설등의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산림환경이나 자연경관을 해치고 나아가서 수행도량인 사찰의 분위기까지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佛敎界는 또 인·허가중 타종교시설의 설립에 관련된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찰지역이라고 볼수있는 곳에 타종교의 대규모시설이 인·허가될 경우 종교간의 분쟁도 예견된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法住寺·梵魚寺지역에 분쟁요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맡게될 경우 이같은 사태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70%이상의 사찰이 국립공원내에 있고 전통사찰과

광활한 사찰림을 가지고 있는 佛敎界는 지금까지 공원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공개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하는 제도 아래에서 그 수익금으로 문화재 계승·보존을 위한 기금을 얻어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세원마련을 위해 국립공원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곳에 대표소를 설치하게 되고 따라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불교계의 우려다.

불교계는 지금까지 국립공원이 건설부에 소속되어 공원입장료가 순수하게 산림보존및 사찰문화재 유지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내무부로 옮겨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쓰이게 되면 공원의 황폐화, 사찰문화재 유지·보수에의 곤란이 따르게 될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12.3. 中央日報)

自然公園法の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期待

우리나라 공원법은 '67년 3월3일 법률제1909호로 자연공원지정관리가 주체가된 公園法이 공포된데서 비롯된다. '67년 12월29일 국립공원지리산을 효시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실시됐으나 국립공원관리는 내무부산하 地自體에 위임관리해 왔었다. 자연공원인 국립·도립·군립공원지정이 세계적 자연보존 의식향상과 국민의 자연친숙기회 욕구증대에 따라 국립공원등의 지정이 팽창, '80년 1월4일(법률 3243호)자 이법은 自然公園法과 都市公園法과 분리제정된다. 그후 81. 12. 31.(법3492호)과 '82. 12. 31.(법 3644호) 두번의 개정을 거듭해오다 '84년경부터 地自體실시설과 때를 같이하여 국립공원만은 地自體의 위임관리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안이 정부 관계부처에서 검토된 끝에 제131회 정기국회 통과를보아 '86. 12. 31. 법률4000호로 공포한 「자연공원법 제 8 장 2」에 의해 87.7.1 발족한 전문국가관리기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된 것이다.

또한 동법 54조 2 와 동법부칙 5

조에 따라 한국국립공원협회도 민법적용만 받던 종전의 형태에서 발전적으로 동법의 보호로 더욱 강력한 홍보·계도·자원조사 활동등을 수행할수 있게 규정했다.

미국은 행정管理는 중앙정부(내무부 국립공원국) 공무원, 현업관리는 민간기관이 分擔하는 二元化이고 日本은 行政관리는 중앙정부(환경청자연보호국)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맡고 청소및 주차장 운영 등은 美化관리재단이 맡는 多元化형태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난것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사법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점등 많은 취약점이 보완되지 못했다. 비록 투자재원조달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얻기위해 경제기획원차관·내무부차관이 공단의 비상근이사로 참여하긴 했으나 회의때는 국·과장이 대리출석하고 때로는 계장급이 얼굴을 내는 정도였고 공단이사장의 자율권이 거의 없는 맹점과 정부투자예산의 폭이 점차 감축되어 60%이상을 자체수

입(입장료·주차료등)에 의존하는 운영상태이기에 자연휴식제 실시나 인원제한, 시간제한 실시에 따른 자연휴식 확대등은 공단운영면에선 큰 부담이 될것으로 이점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반면 내무부에 이관될 경우 보호부서가 각지자체(시·도·시·군)에 깔려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공원을 일괄관리하게 되고 인력·장비면에서 단연 우위에 있으며 지자체실시 후에도 자립도가 강한 지자체가 해야될 정도이기에 당분간은 강력한 통제가 가능할것으로 본다. 특히 법상에는 명시됐으나 사문화되고 있는 자연공원법36조 4 (자연자원의 조사)의 10년 주기 자연자원조사등의 시행으로 정확한 자연자원의 실태와 변화를 측정해야 할것이다.

내무부는 지난날의 경험을 거울삼고 공단의 전문인력 양성등 장점을 살려 이제 다시 변동이 없는 국립공원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할것이다. <▷>